

더 많이 아파야 사업장 변경 가능성이 생기는 이주노동자의 기막힌 현실

정영섭 이주노동자 활동가,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집행위원

한국의 대표적인 생산직 이주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사업장 변경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고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중 25조 1항 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제4조 (근로조건 위반) ...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재해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사용자의 법 위반이 법적으로 판가름이 나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림의 떡이다.

법 25조 1항 3호에 따른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전부터 지침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적혀 있는 진단서’를 요구했다. 왜 3개월인지 근거가 불분명할뿐더러, 웬만큼 아파서는 사업장 변경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1~2개월 진단받으면 왜 사업장 변경 요건이 안되는 것인가? 부상과 질병을 더 키우라는 말인가?

이주노동자의 가장 흔한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중량물을 반복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 아무리 20~30대 건강한 노동자라도 아플 수밖에 없다. 일해야 하니 병원에도 다니기가 힘들어, 참다가 증세가 악화된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받은 진단서에는 보통 ‘보존 치료를 요하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피하는 게 필요함’ 같은 말이 적힌다. 치료 개월 수가 명확히 쓰여 있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변경이 잘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쉬운 일로 바꿔 주지도 않는다. 애초에 쉬운 일이 없거니와, 있다고 해도 이주노동자의 몫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까다롭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강화되었다. 이제 직업환경의학전문가가 발행하는 업무적합성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지 않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도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파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 판장애,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서와 업무적합성평가서로 5월에 사업장 변경 진정을 냈는데, 아직도 변경 처리가 안 되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나가보니 사업주가 다른 업무(그래봐야 비슷한 일)로 바꿨고, 그래서 업무적합성평가서상의 업무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이 회사는 노동자를 패씸하게 여겨 안 받던 기숙사비를 내놓으라고 5백여만 원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아픈 노동자를 데리고 일하는 게 회사에도 좋을 리 없지만, 사업주는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낸 것을 패씸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노동자들도 회사 바꾸겠다고 할까 봐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법제도 때문에,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아픈 것을 참고 욕먹고 괴롭힘당하며 일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